

시보는 공무원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선	기관의 장
람	



제31호(호외) 2022. 8. 16.(화)

공고

- 광양시 공고 제2022-1631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(기간연장)을 위한 공람 공고..... 1
- 광양시 공고 제2022-1632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(기간연장)을 위한 공람 공고..... 2

회										
람										

▶ 발행 : 광양시 ▶ 편집 : 홍보소통실 (☎ 797-2323, 행정 2713)

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(기간연장)을 위한 공람 공고
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3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(기간연장)을 위하여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(기간연장)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.

2022. 08. 16.

광 양 시 장

1. 제한지역 위치 : 광양시 도이동 일원(변경없음)
2. 제한지역 면적 : 804,278m²(변경없음)
3. 제한사항(변경없음)
 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6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(건축물의 건축, 공작물의 설치, 토지의 형질변경, 토석채취 등).
다만,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행위 및 이미 허가한 사항은 제외
4. 제한사유(변경-사업명칭)
 - 성황·도이2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 및 도시개발 예정구역에 대한 효율적인 토지관리를 위하여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제한하고자 함.
5. 제한기간(변경)
 - 기정 : 2019. 09. 05. ~ 2022. 09. 04.(3년)
 - 변경 : 2019. 09. 05. ~ 2024. 09. 04.(5년)
6. 공람 기간 : 공고일로부터 14일간
7. 관계도면 및 세부조서 : 게재 생략
8. 공람 및 의견 제출장소 : 광양시청 택지과
9. 기타사항 :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택지과 택지개발팀(061-797-2848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광양시 공고 제2022-1632호

광양시 공고 제2022-1632호

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(기간연장)을 위한 공람 공고
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3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(기간연장)을 위하여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(기간연장)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.

2022. 08. 16.

광 양 시 장

1. 제한지역 위치 : 광양시 광양읍 인서리 일원(변경없음)
2. 제한지역 면적 : 626,984㎡(변경없음)
3. 제한사항(변경없음)
 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6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(건축물의 건축, 공작물의 설치, 토지의 형질변경, 토석채취 등).
 - 다만,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행위 및 이미 허가한 사항은 제외
4. 제한사유(변경없음)
 - 인서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 및 도시개발 예정구역에 대한 효율적인 토지관리를 위하여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제한하고자 함.
5. 제한기간(변경)
 - 기정 : 2019. 09. 05. ~ 2022. 09. 04.(3년)
 - 변경 : 2019. 09. 05. ~ 2024. 09. 04.(5년)
6. 공람 기간 : 공고일로부터 14일간
7. 관계도면 및 세부조서 : 게재 생략
8. 공람 및 의견 제출장소 : 광양시청 택지과
9. 기타사항 :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택지과 택지개발팀(061-797-3431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